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선 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60
----------	---------

발의연월일: 2021년 5월 26일

발 의 자: 강선영, 김동협, 신낙형, 김현희
박성호, 송순호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 중 조례의 제명과 별지 신청서식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로 개정함
- 나. 지원제외 대상에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사람을 추가함 (안 제4조)
- 다. 단서조항을 법제형식에 맞게 수정함 (안 제5조)
- 라. 별지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을 추가함 (별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협조부서: 어르신복지과

다. 입법예고: 2021. 5. 27. ~ 6. 1.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제외)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하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u></p> <p>제3조(지원대상자) ① (생 략)</p> <p>② 「<u>장애인복지법</u>」 및 「<u>노인장기요양보험법</u>」 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u>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u>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u></p> <p>제3조(지원대상자) ① (현행과 같 음)</p> <p><u><삭 제></u></p> <p>제4조(지원제외) ① 「<u>장애인복지법</u>」 및 「<u>노인장기요양보험법</u>」 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u>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u></p> <p>② 「<u>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u>」 제4조 제2항에 따른 <u>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u></p>

제4조(지원기준) ① (생략)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1. 2. (생략)

제5조 ~ 제7조 (생략)

[별지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 구 길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			
①건강상태		※ 커튼블린드(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결원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①, ②, ③은 해당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제5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별지서식]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	건강상태	※ 커튼블린드 및 일용 등 구체적인 기재		
	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여부 등 확인		
	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있음 ()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보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 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개정 2016. 5. 29.>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성인용 보행기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한다. 이때 공단은 해당품목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